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17 선고 2022가단129187 판결 [사해행위 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3. 3.

판 결 선 고 2023. 3. 17.

주 문

1. 별지 목록에 나오는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① C와 피고 등이 2021. 4. 5.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9,392,13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함과 아울러, ② 피고는 원고에게 9,392,13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피보전권리

가. 소외 C는 소외 주식회사 D와 2016.4.7.자 대출금 600만원, 대출기간 60개월, 지연배상금이율 27.9%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채무가 발생하였고, 소외 주식회사 D은 위 채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85649 대여금 이행권고결정을 2018.1.30. 확정받았습니다.

나. 전항 기재 채권은 각 채권양수도계약을 통해 2018.4.27. E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가 2021.1.22. 최종양도받았으며, 소외 주식회사 D이 2018.1.30. 확정 받은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85649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원고는 승계집행문 부여를 받아 승계집행문등본이 소외 C에게 2021.9.28. 송달되었습니다.

다. 원고의 2022.7.22.자 소외 C의 채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

원 금 : 5,596,947원

이 자 : 7,891,490원

합 계 : 9,392,137원

2.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내용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청구원인 제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습니다.

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소외 C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함)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체결하고, 2021.10.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책임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서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다. 무자력

소외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무자력을 초래하였습니다.

라. 채무자의 사해의사

소외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면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거나 부족한 공동담보가 더욱 심화되게 되어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다41850 판결등참조),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다37001 판결등참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C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책임재산을 처분하였는바, 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됩니다.

3. 가액배상의 청구(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4.5. 소외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사해행위가 있은 후 소유자 F으로 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11.11. 접수 제224257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원고는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지 않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위 부동산의 가액은 2021년 매매 거래가 기준이며 금 298,000,000원이고, 사해행위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은 없으며 소외 C의 상속지분 9분의2을 곱하면 금 66,222,222원입니다.

소외 C의 2022.07.22.자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이 9,392,137원 이므로, 피보전채권액의 한도내에서 가액의 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추후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 후 새로 발생한 채권액은 포함되지 아니 하지만,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4.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시어 부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세대주택 목록>

1층외 건물외 표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보영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유부분의 건물외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50.5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서울특별시 성북구 대 143㎡

대지권의종류 : 1 소용결

대지권의배율 : 143분의 31.58

